



심사보고서

의안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429호
심사일자	2026. 06. 15. (월)



위원장 이강무

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제429호
------	-------

2026년 06월 15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05. 28. 송파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6. 05. 30.
- 다. 상정일자 : 2026. 04. 09. 제33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 설명의 요지 (채정진 건축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(2026년 12월 31일) 도래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 - 2026년 12월 31일 → 2031년 12월 31일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, 「건축법」 제87조의3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평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손지훈 전문위원)

- 본 안건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.
- 안 제8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.
-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,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후 5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